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중소기업의 가입승계 지원제도

가입승계와 상속세는 이는 만큼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고용 유지, 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의 가입승계에 세제지원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상속세

사람이 사망(또는 실종선고)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존재하는 유산총액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타인에게 증여되는 유증재산,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한 사인증여재산, 특별연고자가 분여받는 재산, 그 외에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인(또는 수유자)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기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는데,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자녀공제, 연로자공

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의 인적공제와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의 물적공제가 있다.

2. 가업상속공제

1) 가업상속공제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가업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가업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의 주식)의 전부를 상속인 중 해당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되,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사업과 과세유종장소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음식점업은 포함한다.

주식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상장법인은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업상속공제액은 다음 ①과 ②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①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피상속인이 계속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60억,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80억원, 20년 이상이면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② 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5년 이내에 10%)을 처분하거나 당해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당초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기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가업승계에 대한 신청은 상속세의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되며,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상의 적용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승계이후에도 세법에서 정한 사후 관리요건에 위배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 공제요건

- 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일 것(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친족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법인은 40%) 이상 보유한 법인은 가업에 해당함)
- ②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③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면서 사망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 ④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까지 대표이사로 취임 할 것
- ⑤ 가업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지 않을 것

3. 정부의 기업승계 지원제도

1) 기업상속공제액의 확대 및 공제요건의 완화

올해부터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승계하여 상속 후에도 기업을 상속받은 자가 해당 기업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 기업상속공제액을 종전의 20%에서 40%로 확대했으며, 기업상속공제의 한도액도 종전의 30억 원에서 피상속인의 기업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60억원에서 100억원까지로 확대하여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 주었다.

또한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의 요건을 완화했다.

2)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에 대한 분할납부

기업상속재산이 주로 부동산 또는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면 사업용 자산의 매각, 경영권 유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 중 기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3년 거치후 12년간, 50% 미만이면 2년 거치후 5년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장기연부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부연납은 첫째,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 만원 초과할 것, 둘째, 상속세의 신고기한(누락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 셋째,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의 요건들을 충족할 때 적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경우에

는 허가후 5년간(거치기간은 없음)에 걸쳐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3) 기업승계목적의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부모(60세 이상)로부터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적법하게 기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기업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에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 증여자의 사망시에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정상세율로 과세하여 정산한다. 

■ 문의 : (02)552-6100 대현회계법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미리 하세요!

국세청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보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 오프라인(세무서 방문) 동의 신청 방법 등이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에서 상담할 수 있다.